

**■■■■ Question** 제조업체 동일 율타리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시 안전관리자선임 의무가 있는지요? 2개 이상의 사업장 총 근로자수는 90명이고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5명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각각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며 총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2조 제4항에 의해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이란 동일명칭의 사업장인지 아니면 사업주만 같고 이름이 다른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11416961 ]

1. 두개의 별도 사업체(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 율타리 안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체로써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가 45명일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주가 인근에 2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총 근로자수가 300인 이내라면 1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Question** 해상 작업이 80%인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장에 가기 위해 통선 및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선 및 선박을 타는 곳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작업자가 추락 및 실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설물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11401908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3.17)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중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작업통로 또는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써 음식료품 제조업이며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연면적 약 1,650㎡)과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약 27배를 보일러에서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허가업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 접수번호 : 11374830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및 도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현장소장(1인)과 팀장(5명), 협력업체 소장(5명)과 근로자 대표 1명을 참석시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근로자수를 협력업체수 만큼 5명을 참석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노사 동수의 인원이 참석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마다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면, 협력업체수가 40개업체라면 협력업체 소장 40명 근로자 40명을 참석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1130157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에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수급인인 사업주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은 수급받은 공정의 해당 작업장 점검시에만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